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19년 봉화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19. 9.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6	9	2	17,361	1	87,000	1	1,840
1	□ □ 과	근속승진자(□급) □□급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1						
2	□ □ 과	□급 승진임용 부적정		1						
3	□□□□과	□□□□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1						
4	□ □ 과	물품 계약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1						
5	□□□□과	□□□□□□ 용역 계약 적격심사 부적정		1						
6	□□□□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미이행	1							
7	□□□□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 지역 내 공장설립 부적정		1						
8	□□□□과	□□□□체형 보조사업 관리 소홀	1		1	1,800				
9	□□□□과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불법 전용		1						
10	□□□□ □□□□과	화물운송종사미자격자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미이행	1		1	15,561				
11	□□□□과	□□□□□□□□□□ 마을연계 조성사업 □□□□ 수의계약 요청 등 부적정	1				1	87,000		
12	□□□□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추진 부적정	1							
13	□□□□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도급 업무 부적정		1						
14	□□□□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1						1	1,840
15	□□□□ □□□□과	□□□□ 봉화 □□□ 조성사업 설계용역 부적정		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속승진자(□급) □급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상·하반기 및 수시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2015. 12. 18), (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2018. 7. 1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하여 현원이 소멸할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에서는 근속승진자가 승진할 경우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되어 근속승진자 승진후속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봉화군 총무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2015. 9. 30일 개최하면서 ## □급 □□□이 ## □급으로 승진의결 되었으나, □급 근속승진으로 후속 승진요인이 없음에도 인사행정시스템(인사기록 / 인사기록관리 / 인사기본관리 또는 개인별인사기록)에서 근속승진 여부 확인 및 근속승진자 정원 별도 관리 등에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하고 ## □급 □□□을 ## □급으로 승진 의결하고, 각각 2015. 10. 1일 승진 임용하였다.

또한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2018. 8. 3일 개최하면서 %% □급 □□□이 %% □급으로 승진의결 되었으나, □급 근속승진으로 후속 승진요인이 없음에도 인사행정시스템(인사기록 / 인사기록관리 / 인사기본관리 또는 개인별인사기록)에서 근속승진 여부 확인 및 근속승진자 정원 별도 관리 등에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하고 %% □급 □□□을 %% □급으로 승진 의결하고, 각각 2018. 8. 7일 승진 임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 □급 □□□, %% □급 □□□이 각각 □급으로 승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산정 및 승진 업무를 처리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급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속 및 일반승진과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2017. 3. 8), (행정안전부 예규 제46호, 2018. 9. 21)]」에 따르면 근속승진은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을 □급으로 승진 임용 할 경우 장기근속자가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봉화군 총무과에서는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2017. 12. 22일 개최하면서 **** □급 승진후보자명부순위 2위 □□□을 □급으로 일반승진 의결하고, **** □급 승진후보자명부순위 1위 □□□을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 승진에서 제외하고, 2018. 1. 10일 6급 근속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속 승진 의결하였다.

또한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2018. 12. 21일 개최하면서 !! 7급 승진후보자명부순위 2위 □□□을 □급으로 일반 승진 의결하고, !! □급 승진후보자명부순위 1위 □□□을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 승진에서 제외하고, 2019. 1. 8일 6급 근속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속 승진 의결하였다.

그 결과 승진임용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거나, 장기근속자가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 승진할 수 없었던 **** □급 □□□(2위), !! □급 □□□(2위)이 □급으로 승진하는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근속승진대상자를 제외하지 않고 일반승진 심의를 하는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18년 □□□□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을 위하여 2018년도에 [표 1]과 같이 □□□□ 방재시스템 구축 및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2018년 □□□□ 방재시스템 구축 및 보수정비 사업 내역

(단위:천 원)

연번	사찰명	사업내용	교부결정일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1	□□□	방재시스템 --	2018.5.16	252,500	101,000	30,300	70,700	50,500	
2	□□□	--개축 및 주변정비	2018.4.12.	550,000	100,000	180,000	220,000	50,000	
3	□□□	--설치	2018.4.12.	132,000	-	40,000	66,000	26,000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1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

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2조에는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인지를 확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봉화군 □□□□□과에서는 [표 2]의 □□□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황과 같이 2018. 5. 16.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인 2018. 5. 10. 이미 사업을 준공하였음에도 2018. 6. 11.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표 3]의 □□□□ 보수사업 사업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2018. 4. 12. □□□ □□□ 개축 및 주변정비 사업의 교부결정을 하면서 2018. 2. 1. 보조사업자가 (주)□□□□□□□□와 계약을 맺어 착수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2018. 6. 27. 45,900천 원을 지출하였고, 2018. 4. 12. 교부 결정한 □□□ □□설치사업은 2018. 3. 16. □□□□□사무소와 계약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2018. 6. 22. 9,820천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2] □□□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황

사업명	교부결정일	계약현황				지급일	비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업체명		
□□□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2018.5.16.	2018.4.10.	2018.4.12.	2018.5.10.	□□□□(주)	2018.6.11.	

[표 3] □□□□ 보수사업 사업비 부적정 지급 현황

사업명	교부결정일	설계용역 계약현황				지급일	비고
		계약일	착수일	완료일	업체명		
———— 개축 및 주변정비 사업	2018.4.12.	2018.2.1.	2018.2.1.	2018.4.30.	□□건축사 사무소	2018.6.27.	
———— 석축설치 사업	2018.4.12.	2018.3.16.	2018.3.16.	2018.4.14.	———— 사무소	2018.6.22.	

또한 2018. 5. 10. ———(주)에서 준공한 ———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2018. 12. 6. (주)————에서 준공한 ——— 개축 및 주변정비 사업 및 2018. 8. 22. (주)————에서 완료한 ——— 설치 사업에 대하여 2018. 6. 11. 2018. 12. 26.과 2018. 9. 7. 보조금을 지출하였음에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지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 보조 사업이 관련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시행되었으며 또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보조사업이 재원별로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계약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17. 5월 ——— 구매 설치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물품 계약 현황

(단위:천 원)

계약명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금액	개찰순위	계약상대자
————구매 설치	2017.5.15.	2017. 6.1.	202,720	2	————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 4. 1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심사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는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구분·기록되어 있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명시된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신용평가등급 평점을 부여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평가등급을 명확히 확인하여 명시된 평가등급을 기준등급에 맞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봉화군 재정과에서는 ——— 구매 설치 계약 건을 입찰 공고 후 2017. 5. 23. 개찰하여 개찰 1순위 업체인 “(주)————기술”은 유효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다는 사유로 (낙찰 예정자)포기각서를 제출 받은 뒤 개찰 2순위 업체인 ‘————신’의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위 업체가 제출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평가등급이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상 등급인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 확인을 소홀히 하여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로 부당하게 평가하였다.

한편, [표 2]와 같이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경우 해당업체는 적격통과 점수(85점)에 미달(84.34점)하는 부적격 업체에 해당한다.

[표 2] 감사기간 중 ‘————신’ 정당 적격심사 결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부적정평가	정당평가	비고
계		100	85.34	84.34	
물품납품 이행능력	기술능력	10	10	10	물품구매 만점부여
	경영상태	30	29 ¹⁾	28 ²⁾	신용평가등급
입찰가격		70	45.34	45.34	
신 인 도		+2~△2	1	1	
결격사유		△20	0	0	

- 1)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를 적용한 평점
2)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를 적용한 평점

그 결과, 계약능력 부적격자인 ‘————신’이 부당하게 낙찰되어 2017. 6. 2. 202,720천 원의 납품권을 부여받는 등 공정한 경쟁 입찰과 적절한 계약 이행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를 부당하게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후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용역 계약 적격심사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17. 6월 “2017년 ————— 용역”을 공고하고 같은 해 6. 30. “(주)—————회”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용역 계약 현황

(단위:천 원)

계약명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금액	개찰순위	계약상대자
17년 ————— 용역	2017.6.19.	2017.6.30.	87,660	1	(주)—————회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488호, 2016. 6. 2.)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 중 입찰참가자가 택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적용 시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하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 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학술연구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 자료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2017. 6. 19. 입찰공고 후 같은 해 6. 23. 개찰하여 적격심사 1순위자인 ‘(주)—————회’의 적격심사를 하면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한국은행 발간 “기업 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55.00%, 유동비율 186.86%)을 적용하지 않고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9.11%, 유동비율 130.42%)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표 2] 감사기간 중 ‘(주)—————회’ 적격심사 결과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부적정평가	정당평가
합계		100	96.1	94.6
시공경험평가	이행실적	-	-	-
경영상태	재무비율 ³⁾	10	9.5	8
	신용평가등급	-	-	-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	-	-
신인도		+12~△7	0	0
입찰가격		90	86.6	86.6
결격사유		△20	0	0

그 결과 위 [표 2]와 같이 당초 입찰공고문에 게시된 한국은행 발간 “기업 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을 경우 적격심사 통과 점수(95점)에 미달(94.6점)하는 부적격업체 “(주) —————회”와 같은 해 6. 30. 87,660천 원에 계약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적격심사 후순위 업체들은 정당한 수주기회를 상실하는 등 등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경영상태 기준비율(자기자본: 55.00%, 유동비율:186.86% 적용)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를 부당하게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후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등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8조 제1항 및 제84조 제3항 제18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4조 제1항 및 제37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자체 적발 또는 경찰의 통보를 통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는데도 다음 [표 1]과 같이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

위반행위			미조치내역	비고
위반행위일	위반행위자 또는 위반차량	위반행위 유형		
2016. 2.18.	96소	자동차 불법 튜닝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및 미실시	교통안전공단 통보
2016. 3. 7.	96소	자동차 불법 튜닝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및 미실시	교통안전공단 통보
2016. 9. 6.	황 (봉화군 면)	이륜자동차 미등록	과태료 50만원 미부과	봉화경찰서 통보
2017. 3.10.	하 (봉화군 면)	자동차 불법 튜닝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미실시	봉화경찰서 통보
2017. 9. 1.	김 (봉화군 읍)	자동차번호등록번호판 스티커 부착	과태료 30만원 미부과	강원지방경찰청 통보
2018. 6.17.	ZHAO (봉화군)	이륜자동차 미등록	과태료 50만원 미부과	봉화경찰서 통보
2018.11. 5.	김 (봉화군 면)	이륜자동차 미등록	과태료 50만원 미부과	봉화경찰서 통보

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 미이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2015. 10. 6. 과태료 500천 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표 2]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 미이행

위반행위		행정처분	과태료 납부 여부	미납자에 대한 조치	비고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유형				
김 (봉화군 풍 -##-31)	이륜자동차 미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위반)	과태료 50만원 부과 (2015.10.6.)	부	-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부과한 다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표 3]과 같이 동일인의 동일 위반행위가 경찰에 재차 적발되는 등 질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과태료 미납자의 위반행위 적발 건

위반행위			비고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일	
김 (봉화군 풍 -##-31)	이륜자동차 미등록	2016. 2. 1.	봉화경찰서 통보
		2016.10.11.	봉화경찰서 통보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입지 관련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봉화군 —과(현 —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의 성장기반 구축, 생활환경 개선, 특화마을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자생력 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억 농촌%%%%%%%%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5년경(일자 미상) —역 —마을 운영위원회의 건의로 소득기반분야 저온저장고 사업을 —시설 사업으로 변경하고 2016. 10. 5. —과-7327호로 —역 —사업(2단계)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재산면 @###-1번지 외 1필지에 건설이 계획된 —시설은 2017. 10. 11. 건축신고서가 접수되어 —과에서는 —실 등 9개 부서(기관)에 협의한 후 같은 해 12. 18. [표 1]과 같이 건축신고수리 하고, 2018. 1. 30. 착공신고 수리하였으며, 현재는 건축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설을 위한 상수도 인입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9. 10.월 준공예정에 있다.

[표 1] —시설 건축개요

건축주	소재지	건축용도	면적(㎡)		접수일자	신고수리일
			대지	건축		
봉화군	재산면 @###-1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432	191.25	2017.10.11.	2017.12.18.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⁴⁾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오염원인 공장(제조업소)이 입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17. 10. 12. ####과-55918호로 —실 등 9개 부서(기관)에 건축신고에 대한 협의를 요청에 대하여 —담당(現 —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에 대한 담당자 검토는 누락한 채, —담당자에게만 공람하여 절수설비 담당자는 절수설비 및 수도급수에 대한 사항만을 [표 2]와 같이 세움터⁵⁾에 협의의견이 제출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 13. —과-63479호로 건축물 용도변경(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재협의 문서는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관련 담당자 등 공람도 없이 김—(시설#급, 現 —과) 1인 접수로 처리하였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

5) 건축행정전산화시스템

[표 2] 도시환경과 협의 의견내용

협의부서	협의일자	회신결과	회신내용
과	2017.10.12.	허가가능	1. 재산면 @@@-1번지 외 1필지의 건축협의 신청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계획서 협의에 대하여 수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리며, 절수설비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절수설비 설치계획서 검토 협의와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도급수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며, 3. 수도급수 신청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봉화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결과 재산면 —- ####-1번지 외 1필지는 수도법에서 정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상에도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확인되는데도 공장설립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표 3]과 같이 공장이 입지하게 되었다.

[표 3]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건축 내역

건축주	건축위치	용도	면적(㎡)		토지이용규제사항	비고
			공장(제조업소)	연면적		
봉화군	재산면 —- ####-1번지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191.25	191.25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재산취수장 유하거리 약 4.7km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수도법」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공장이 설립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함께 임중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체험 보조사업 관리 소홀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는 말산업 육성과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부터 “@@@@체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18. 2. 13.)에 따르면 체험참여 학생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출석부에 날짜를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험참여자에 대해서는 —체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 관련 보장이 되는 기승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미가입자는 체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는 —체험 보조사업자가 군수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적보고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표 1]와 같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체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2017년에 [표 2]과 같이 관내 ———학교 학생 80명 중 이—— 등 51명에 대하여 개인별 체험횟수 기준인 총 10회에 미달하여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2회를 체험에 참여하지 않은 출석기록부(5면)를 제출하였는데도 출석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회 모두 체험에 참여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51명의 체험 미참여 횟수 계 60회에 대한 보조금 1,800천 원(1회당 30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1】 @@@@ 체험 사업 현황(2017~2018년)

(단위:천 원)

연도	사 업 량 (체험인원수)	사 업 비(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613명	189,060	56,718	22,687	109,655
2017	355명	106,500	31,950	12,780	61,770
2018	258명	82,560	24,768	9,907	47,885

또한 2018년에는 —————학교 학생 1명에 대한 기승자 보험을 체험횟수 3회가 지난 후에야 지연 가입(체험기간 : 2018. 6. 16. ~ 6. 22, 보험가입일 : 2018. 6. 20.) 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체험에 실제 참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체험비가 이—— 등 51명에게 1,800천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기승자 보험 지연가입에 따른 미가입 기간 동안 박——의 ———체험 중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과다 지급된 @@@@체험 보조금 1,800천 원은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체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체험 횟수 및 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표 2] 2017년 @@@@체험 미참여 학생 보조금 지급 내역 (6~7월)

(단위: 천 원)

연 번	학 년	성 명	미 참여 횟수	보조금 지급액	비 고
계	#~#학년	51명	60회	1,800	
1	#학년	이 —	1	30	
2		김 —	1	30	
3		권 —	1	30	
4		함 —	1	30	
5		성 —	1	30	
6		박 —	1	30	
7		권 —	2	60	
8		박 —	1	30	
9		김 —	2	60	
10		김 —	2	60	
11		김 —	1	30	
12		황 —	1	30	
13		원 —	1	30	
14		김 —	2	60	
15		김 —	1	30	
16		홍 —	1	30	
17	#학년	김 —	1	30	
18		김 —	2	60	
19		홍 —	1	30	
20		정 —	1	30	
21		김 —	1	30	
22		김 —	2	60	
23		문 —	1	30	
24		송 —	1	30	
25		박 —	1	30	
26		전 —	1	30	
27		김 —	1	30	
28		임 —	2	60	
29	#학년	박 —	1	30	
30		박 —	2	60	
31		성 —	1	30	
32		이 —	1	30	
33		정 —	1	30	
34		최 —	1	30	
35		황 —	1	30	
36		박 —	2	60	
37	#학년	김 —	1	30	
38		박 —	1	30	
39		변 —	1	30	
40		권 —	1	30	
41		이 —	1	30	
42		박 —	1	30	
43		김 —	1	30	
44		김 —	1	30	
45	#학년	김 —	1	30	
46		이 —	1	30	
47		심 —	1	30	
48		변 —	1	30	
49		김 —	1	30	
50	#학년	강 —	1	30	
51		성 —	1	30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 · 주 의 요 구

제 목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불법 전용 등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봉화— 개원을 위하여 — 부지 선정 및 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 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시 요청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2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농지전용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등의 인·허가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불법 전용

봉화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농업진흥구역인 봉화읍 —###-3번지 등 7개 필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하지 않은 채, 2018. 5. 1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018. 9. 1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2차례에 걸쳐 인근 공사장⁶⁾에서 발생한 사토 총78,000m³를 무단 반입하여 4m를 성토하는 등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표 1] 농지 불법 전용 내역

구분	시기	불법 전용 농지 내역			사업량
		용도 지역	소재지	공부면적(m ²)	
1차	2018.5.17. ~2018.6.30.	농업진흥구역	봉화읍 —###-3, ###-2, ###-8, ###-7, ###-6, ###-9, ###-5	15,245	45,000m ³ 반입 /3m성토
2차	2018.9.10. ~2018.10.31.				33,000m ³ 반입 /1m성토 및 진입로 사면조성

나.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및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부적정

봉화군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인 봉화읍 —###-3번지 등 8개 필지에 대하여 2019. 2. 25. —과가 신청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해당 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중일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관리부서인 —으로 통보 하여야 했으나, 오히려 신청 다음 날인 같은 해 2. 26. “적합” 의견으로 협의 동의 회신 하였다.

6) ##### 부지조성 공사(—과 시행)

[표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내역

신청 일시	협의 일시	수 허가자	농지전용 협의농지					사업목적
			용도 지역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m ²)	전용면적 (m ²)	
계						17,205	15,372	
2019. 2. 25.	2019. 2. 26.	봉화군수 (—과)	농업진흥구역	봉화읍 —###-3	답	3,584	3,584	봉화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봉화읍 —###-2	답	3,952	3,952	
				봉화읍 —###-11	구거	1,960	127	
				봉화읍 —###-8	답	1,035	1,035	
				봉화읍 —###-7	답	833	833	
				봉화읍 —###-6	답	2,790	2,790	
				봉화읍 —###-9	답	694	694	
				봉화읍 —###-5	답	2,357	2,357	

다. 농지전용 불가지역 회피 목적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부적정

「농지법」 제37조 및 「2017년 농지업무편람⁷⁾」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는 「건축법」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방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위 [표 2]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인 봉화읍 —###-3번지 등 8개 필지에 대하여 2019. 2. 25. 안전건설과가 신청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의 건 및 첨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기간을 한정하여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만한 사업인지, 영구적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사용해야 할 사업인지를 검토한 후 협의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이 소방서 부지를 조성하여 영구적으로 농지를 전용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려하지 않고 협의에 동의 회신 하였다.

7) 농림축산식품부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80-14

그결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이 무단으로 훼손되었으며, 적법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훼손된 농지가 원상 복구 될 수 있는 기회가 일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허가(협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및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미이행 등 「농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후속조치 이행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봉화군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미이행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_____과(현 _____과)
내 용

봉화군 _____과(현 _____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화물운수사업 관계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 하면서,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과로부터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행정처분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처리 결과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위반자 현황을 [표 1]과 같이 통보 받았다.

[표 1] 봉화군 화물차량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 통보 현황

차주명	소 재 지	차량번호	사유발생일	최초통보일 (도 → 군)	최종통보일 (도 → 군)	정밀검사 수검일
권—	법전면 --- ##	경북\$\$배****	2005.09.28.	2016.11.14. (‘16년 8월분)	2018.01.16. (‘17년 10월분)	2017.12.18.
김—	춘양면 --- ###-##	경북\$\$배****	2016.07.02.	2016.11.14. (‘16년 8월분)	2018.01.16. (‘17년 10월분)	2017.12.18.
권—	춘양면 ----- ###-###	경북\$\$배****	2016.06.28.	2016.11.14. (‘16년 8월분)	2017.10.11. (‘17년 6월분)	2017.07.31.
김—	춘양면 --- ###-##	경북\$\$배****	2016.08.26.	2016.11.14. (‘16년 8월분)	2017.10.11. (‘17년 6월분)	2017.07.31.
김—	봉화읍 ----- #-#	경북\$\$바****	2016.01.04.	2016.03.03. (‘16년 1월분)	2018.01.16. (‘17년 10월분)	2017.11.22.
권—	봉화읍 --- ##	경북\$\$바****	2016.10.28.	2017.02.21. (‘16년 10월분)	2018.01.16. (‘17년 10월분)	2017.12.06.
김—	석포면 ----- ##-##	경북\$\$아****	2016.10.07.	2017.07.21. (‘17년 4월분)	2017.10.11. (‘17년 6월분)	2017.08.02.

가.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 미이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아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1차의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의 경우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2차 이상의 위반에 대하여는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_____과(現 _____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_____도 _____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정밀적성검사 행정처분 미이행 통보를 받은 해당 차량에 대하여 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_____과(現 _____과)에서는 경_____과로부터 봉화군 화물운수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전정밀적성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사항을 2016. 03. 03.부터 2018. 01. 16.까지 매월 통보를 받고 공문을 접수하였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조치 미이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3호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 가명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화물 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8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_____과(현 _____과)에서는 _____부 _____과로부터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갖추어 질 때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달된 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봉화군 _____과(現 _____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운전적성 검사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김정배 등 3명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2] 봉화군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차주명	차량번호	지급기간	종사자격 취소일	정밀검사 수검일	매출건	미자격 기간 중 유가보조금 지급액	비 고
합 계					307건	15,561,333원	
_____배	경북 바*****	'16.01.04~'17.11.22.	'16.01.04.	'17.11.22.	192건	10,652,293원	
_____권	경북 바*****	'16.10.28~'17.12.06.	'16.10.28.	'17.12.06.	102건	3,667,692원	
_____정	경북 바*****	'16.11.01~'17.08.02.	'16.10.07.	'17.08.02.	13건	1,241,348원	

그결과,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자격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조치 미이행으로 총 307건, 15,561,333원의 부적정한 유가보조금이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화물종사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유가보조금 15,561천 원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_____ 마을연계 조성사업 _____ 수의계약요청 등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_____과
내 용

봉화군 _____과에서는 _____ 마을연계 조성사업을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주 공종인 _____(@@@+## 등)를 대구지방 조달청에 (주)_____이(대표이사 _____)와 특허 등을 사유로 계약 요청하여 계약금은 2018. 5. 15.(계약기간 : 2018. 5. 15. ~ 2019. 6. 30.) 계약금액 1,335백만 원에, 주탑 등은 2018. 9. 21.(계약기간 : 2018. 9. 21. ~ 2019. 6. 30.) 계약금액 789백만 원에 각각 계약 체결하여 감사일 현재 시공중에 있다.

[표 1] 공 사 현 황
(단위: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		계	도급	관급				
_____	명호	\$\$	보행교, 가동보 설치 등	6,205	1,879	4,326	2018. 1.22.	2018.1.29. ~ 2019.7.22.	제_____설(주)	
마을연계 조성사업										

가. 대체·대용품이 있는 특허물품 수의계약 요청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허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 %%%은 비틀림 및 출렁거림을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는 특허 제품(특허 10-1678849호)이나 이와 같이 비틀림 및 출렁거림을 억제하는 대체·대용품⁸⁾은 여러 종류가 있고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 주탑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납품 시 지방시(4.출렁다리 특별지방시-주탑공)에 따르면 특허 등에 관한 적용 없이 누구나 사업 목적에 맞게 제조·설치 가능한 제품이다.

더욱이 위 관서 —과와 —과에서는 대구지방조달청에 @@@@ (케이블+주탑 등) 구매요청을 할 당시 위 법령에 따라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실시설계용역 기간 중 두 차례(2017. 10. 16., 2017. 10. 23.)에 걸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사업 연결보고서 디자인 선정회의를 통해 (주)————의 제품이 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결정하고 위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사전에 이미 결정하였다.

이후 대체·대용품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는 특허제품으로 대체·대용품이 없고 또한 디자인 선정회의를 통해 제품이 선정되었다는 사유로 2017. 12. 28. 대구지방조달청에 위 업체제품을 특허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조달 요청하였다.

한편, 감사기간 중 위 선정회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체·대용품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사에서 제시한 연결보고서(@@@@) 형식 중(4개안) 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한 형식을 선정하는 자리였고, 참석자도 군의 간부공무원

8) 특허청에서 운영중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검색결과 !!!!크(주), (주)케이블####, (주)%%시티 등 다수의 대체·대용 가능한 물품이 있음

으로 기술성·예술성에 대한 대체·대용품을 검토할 만한 전문적 지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2] 출렁다리(케이블+주탑) 조달요청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17. 11. 27.	◦ ————— 설치공사 견적서 제출받음	2,393,600천 원
2017. 12. 11.	◦ 설계도서 납품	
2017. 12. 28.	◦ 사업 시행	
2017. 12. 28.	◦ ————— 조달구매 요청(봉화군→대구지방조달청)	
2018. 02. 20.	◦ 수의계약 불가 통보(대구지방조달청→봉화군)	분리구매 검토
2018. 03. 27.	◦ ————— 조달구매 재요청(봉화군→대구지방조달청)	1,593,169천 원
2018. 03. 30.	◦ ————— 출원 요청 ⁹⁾ , (주) —————이→특허청	
2018. 05. 15.	◦ ————— 조달구매 계약(대구지방조달청→봉화군)	1,335,070천 원
2018. 06. 18.	◦ ————— 등록 완료	
2018. 07. 20.	◦ ————— 조달구매 재요청(봉화군→대구지방조달청)	934,282천 원
2018. 09. 21.	◦ ————— 조달구매 계약(대구지방조달청→봉화군)	789,000천 원

나. 일부 물품의 수의계약사유 충족 시까지 계약지연 등

대구지방조달청에서는 2018. 2. 20. @@@@ 전체 설계내역서(2,393백만 원) 중 특허부분과 관련 없는 주탑 등은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분리구매를 검토하도록 반려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대구지방조달청 의견대로 위 제품 중 주탑 등은 지방서대로 누구든지 제조·설치 가능하므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분리구매하거나 특허 부분 공중에 대해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물품을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뒤 특허공중에 대해서는 하도급 또는 기술지원방식으로 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주) —————이가 연결보고서 전부의 제조·설치를 하는 것이 시공 및 추후하자보수 등이 효율적이라는 사유로 특허 등록된 케이블부분과 특허

9) 출원요청일과 등록일은 특허청에서 운영중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검색결과임

등이 없는 주탑 부분으로 나누어 기초가격을 재산정¹⁰⁾ 한 뒤 우선 케이블 부분을
2018. 3. 27. 대구지방조달청에 조달수의계약을 요청하여 같은 해 5.15. 계약금액 1,335
백만 원에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주탑 등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을 위한 정당한 수의계약 사유가
없자 (주)————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완료 할 때까지 관급자재 구매 시기를 지
연하다가 2018. 6. 18.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자 당초 시방서 내용을 위 업체의 제품으로
입의 수정하는 등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관련서류를 준비한 뒤 2018. 7. 20. 디자인 등록
된 위 업체의 주탑 등이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사유로 대구지방조달청에 또다시 수의
계약을 요청하여 2018. 9. 21. 계약금 789백만 원에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그 결과 (주)————이는 케이블과 주탑 등 전체 연결보도교 설치·납품권을 부
당하게 얻게 되었고, 주탑 등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 경쟁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다. 시설공사 관련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
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
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
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0) 당초 @@@@ (케이블+주탑) 설계비는 2,393,600천 원이었으나 케이블(1,593,169천 원)과 주탑 등(934,282천 원)으로
분리하면서 사업비가 133,851천 원 증액됨(2,393,600천 원-1,593,169천 원-934,282천 원이 증액됨)

그런데도 @@@@ 시공 시 공사용 가도 마대쌓기(설계 1,726㎡ → 시공 1,130㎡)
및 가동보 시공 시 물막이에 소요되는 마대쌓기(설계 2,940개 → 시공 1,844개)를 설계
보다 실제 적게 시공함으로써 사업비 87,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한 사실
이 있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과다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 총 87,000천 원(제경비 포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봉화읍 소재지 —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 사 현 황

(단위: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량	총공사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실과 (진도)
봉화읍 소재지 —사업	읍소재지 정비 1식	2,241	2018. 08.02.	2018.08.08.~ 2020.07.27.	—건설(주)	####과 (40%)
내 — — — — — 설치공사	인도교 L=75.5m	1,595	2019. 04.02.	2019.04.05.~ 2019.08.02.	—개발(주)	####과 (40%)

가.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및 승인절차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봉화군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봉화읍 소재지 —사업’ 등 2건의 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으로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임에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지시, 검토·확인 및 승인한 사실이 없다.

[표 2] 품질시험계획수립 부적정 등 현황

(단위:백만 원)

공 사 명	총공사비	품질시험 계획수립	시험실	장 비	비고
봉화읍 소재지 —사업	2,241	미승인	무	무	
내 — — — — — 설치공사	1,595	"	"	"	

나. 건설공사 품질기술자 미배치, 시험실(장비) 미설치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건설업자는 [표 3]과 같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표 3]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 적	품질기술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50㎡ 이상	특급1명, 중급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1000억원, 연면적 3만~5만㎡ 이상		"	고급1명, 중급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500억원, 연면적5천~3만㎡ 이상		20㎡ 이상	중급1명, 초급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100억원		"	초급1명 이상

그런데도, 봉화군 도시교통과에서는 “봉화읍 소재지 —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험실, 시험장비 등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단기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확보, 목적물의 성능 보장과 내구성 확보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봉화읍 소재지 ———사업 등 2건의 공사와 관련된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장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도급 업무 등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18. 1.24. —건설(주)(대표이사 —
→)와 계약하여 2019. 6월 현재까지 ‘—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 사 현 황 (단위:천 원)

공 사 명	계약금액	도급자	공사기간	업 체 명	비 고
△△ 하수관로 정비사업	1,404,000	▶▶건설(주)	2018. 2. 1.~ 2019. 7.25.	㈜ ———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건설공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통보하여야하며,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표 2]와 같은 비율이상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

도금액 기준	직접시공 비율	비고
3억원 미만	50%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 이상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10% 이상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르면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공사의 준공일 까지 확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봉화군 ▼▼▼▼과에서는 준공일 까지 직접시공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봉화군 ▼▼▼▼과에서는 ‘▶▶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3]과 같이 도급계약자가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에 따라 도급금액(1,404,000천 원) 전채로 직접시공 하여야 함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으로 계약하여 시공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표 3] 직접시공계획서 미 준수 현황

(단위:천 원)

공 사 명	도금액(a)	도급자	직접시공금액		하도금액 (c)	비고
			계획서	실시공(a-c)		
△△ 하수관로 정비사업	1,376,444	▶▶건설(주)	1,376,444	-	-	최초
	1,404,000		1,404,000 (미승인)	901,000 (64.17%)	503,000	최종

그결과, 직접시공 변경계획서도 제출받지 않고 공사가 시행되는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어 ‘△△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건축물 표지의 건축물 출입구 부착, 건축물대장상에 위반내용 기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행위 제한, 고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봉화읍 ▲▲▲ 85-3번지 상 ● ● ● 의 근린생활시설 등 2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만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총 1,84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 하였다.

[표]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단위:천 원)

위 치	적발일	건축주	용도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비고
계					1,840	
봉화읍 ▲▲▲ 85-3	'16.5.16	...	근린생활	무단증축 99.12㎡	1,019	
명호면 ▲▲▲ 685-3	'17.7.20	WWW	근린생활	무단증축 243.35㎡	821	

그 결과 위반 건축물의 무질서에 따른 환경 악화와 적법하게 건축하고 있는 행위자와의 형평성 등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건축법」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1,840천 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위반건축물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봉화□□□□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표]와 같이 “□□□□ 봉화□□□□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17. 6. 22. ‘□□□□□□□□소 대표 □□□’와 계약하고 2017. 11. 30. 완료하였다.

[표] 용역 현황

(단위:천 원)

용역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읍면	번지					
□□□□ 봉화□□□□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봉화	□□□192-1	실시설계 용역 1식	186,000	2017.6.22.	2017. 6.28.~ 2017.11.30.	▶▶▶ 건축사사무소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 1. 23)」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문서 중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로 발생하는 하자과 설계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시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출된 설계도서 중 “지질조사보고서”를 보면 지하수위측정 결과 지하수위가 4.0m로 측정되어있으나 ‘설계도면’에는 지하구조물 터파기가 5.7m로 설계되었음에도 흙막이, 지하구조물 방수대책 등 지하수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공사 착공 후 지하수가 용출되어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수 없게 된 것은 설계구조의 불합리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설계도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봉화군 □□□□□□□□과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설계도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 착공 후 지하수가 용출되어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없게 되자 지하 전기실과 기계실을 지상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추가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설계용역비 36,512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할 설계용역비 36,512천 원이 추가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